

논문 2023-2-1 <http://dx.doi.org/10.29056/jsav.2023.06.01>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침해 판단 방법론 개선에 대한 시론적 검토

김시열*†

An Exploratory Review on Improving the Judgment Methodology of Copyright Infringement for Database

Kim, Siyeol*†

요 약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며, 저작물인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때 보호받는 대상은 데이터베이스 자체라기보다 데이터베이스가 갖는 여러 요소 가운데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저작물 유형과 달리 데이터베이스, 특히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자체로는 사람이 인식하는 통상의 표현물과 달리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에서도 최종적인 이용이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이용되는 모습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측면에서의 논의를 뒤쳐지게 하였다. 여러 재판 사례들을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 혹은 그 외의 다른 법익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유사도 산출 모델이 부재함을 알 수 있다. 이 모델의 부재는 증가하는 권리 침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게 하며,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합리적인 유사도 산출 모델 마련을 위한 방향성을 살펴보고, 구체적 사항으로 창작적 표현의 특정 문제와 다양한 요소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비교 알고리즘의 도출 방향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Copyright Act recognizes a database as a type of copyrighted work and protects the copyrights of databases as authorship works. It is notable that what is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Act is not the database itself but the creative expression among its various elements. However, databases, particularly electronic databases, have unique characteristics that make them difficult to perceive and understand compared to other forms of expression. Furthermore, databases are often used in the intermediate stages rather than the final stages, hindering discussions on copyrights for databases. Various legal cases have revealed the absence of effective and reasonable similarity measurement models to prove copyright infringements or violations of other legal rights related to databases. The absence of models makes it difficult to adequately respond to increasing rights infringements and weakens the protection of legitimate rights holders. This study explores directions for developing a reasonable similarity measurement model to address this issue, specifically the direction of deriving a comparison algorithm that is applicable to the problems and various factors of creative expression.

한글키워드 :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침해, 정량적 유사도, 표현, 실질적 유사성

keywords : data, database, copyright infringement, quantitative similarity, expression, substantial similarity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법학박사)

접수일자: 2023.04.23. 심사완료: 2023.06.08.

† 교신저자: 김시열(email: sykimlaw@hanmail.net) 게재확정: 2023.06.20.

1. 서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다양한 서비스의 고도화는 데이터 가치를 더욱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데이터는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산업적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우리 사회는 데이터의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를 어떻게 억제하고, 정당한 재산적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데이터 자체에 대한 보호는 아니지만, 저작권법은 오래전부터 데이터의 결합체인 데이터베이스를 저작물로 인정함으로써 저작권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다른 창작물과 달리 데이터베이스, 특히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자체로 사람이 인식하는 최종적인 표현물로 쉽게 다루기 어렵다 보니 저작권 측면에서는 관련 논의가 상대적으로 뒤쳐진 측면이 있다. 특히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소스코드 등을 주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과 달리 유의미한 논의를 거의 발견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가 갖는 산업적 중요성, 저작권법이 명시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은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결할 이론의 축적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요건)의 핵심인 실질적 유사성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는 정량적 유사도를 어떠한 과정으로 도출해야 할 것인지를 기존 유사도 산출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적 보호 경계

2.1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서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법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정의(저작권법 제2조 19호)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자체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을 때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저작권법 제2조 18호). 즉,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보호는 편집저작물로서의 가치에 한정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전자적 형태의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비전자적 형태의 편집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1].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는 저작권법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와 편집저작물은 서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일반적인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의 구성 등에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과 달리, 데이터베이스의 가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의 구성과 적절한 키워드의 부과에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이 보는 핵심가치와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보는 핵심가치가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호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가 이론적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3]. 반대로 무리하게 넓은 보호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창작성이 인정된 데이터베이스에 한하여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기능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그에 맞추어 저작권을 인정하게 될 경우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과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다[4]. 생각건대 이러한 논란에 있어서 저작권으로써의 보호는 창작성이 엄격히 요구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닌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저작권이 아닌 권리로써 보호하는 것은 양자를 분리하여 달리 보호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아닌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을 인정하고 있다.

2.2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법론 도출의 고려 요인

우리 저작권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우리 저작권법은 판례 및 이론을 통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적법한 권리의 존재, 주관적 요건 및 객관적 요건의 충족을 요하는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때 객관적 요건을 판단하는 다양한 요소 가운데 실질적 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부적절한 이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판결들에서 실질적 유사성이란 표현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 이 실질적 유사성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실무상 가장 쟁점이 되는 요소이다. 그 이유는 완전히 동일하거나 상이하지 않은 유사한 상태라는 개념의 모호성, 그리고 유사 판단의 대상을 비교대상 전체가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표현으로 한정된 대상에 대한 유사성이라는 점 등으로 인하여 실제 사안에서는 판단에 어려움이 상당하기 때문이다[5].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직면한다. 이는 유사성 판단을 위해 비교할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첫째, 유사성을 비교할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두 가지 요인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는 특정한 표현 요소가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창작성 인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제호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는다.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특정한 표현 요소가 창작성을 인정받아 저작물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효율성 및 표준 등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창작물의 표현이 누가 하더라도 그 표현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을 경우(혹은 복수의 표현이 가능하더라도 그 수가 극히 제한적일 경우) 이를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었다고 하여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본 전제를 고려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 가운데 창작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요소가 창작적 표현으로써 저작물성을 인정받는데 제약이 되는 성질을 갖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비교 방법론에 대해서는 첫 번째 문제의 해결과 연동되어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요소 가운데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표현 요소를 특정하고 이 요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비교 방법론과 유사성 판단 기준을 도출하여야 한다.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의 요소들이 갖는 유사성을 비교 시에는 컴퓨터프로그램 유사성 판단을 위한 방법론을 어느 정도 차용할 수 있다. 소스코드의 비교와 같은 방식은 차용하기 어렵지만, 비문언적 표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요소들을 비교하는 방법은 여러 요소별로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들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비문언적 표현의 유사 비교는 사실 소스코드의 유사 비교 결과를 보완하는 의미

를 가질 뿐 그 자체로서 유사 판단의 본질적 증거로 삼지 않는 실무적 태도는 한계라 할 수 있다.

2.3 유사성 판단과 유사도 산출의 관계

유사성, 특히 실질적 유사성은 유사와 비유사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6]. 이 유사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을 위해 우리나라 실무에서는 정량적 유사도를 산출하여 최종 판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사건을 중심으로 사용되며, 일부 다른 저작물 유형에 대해서도 최근 활용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의 제시를 법원이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고 어느 정도 일반화된 양적 기준을 도출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어서 실질적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7].

그런데 유사도는 유사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질적인 가치를 숫자를 표현수단으로 하여 양적 가치로 나타낸 것이다. 질적 가치를 양적 가치로 환산하여 표현한다는 점에 유사도는 유사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을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갖는다. 유사도는 정도에 대한 수치일 뿐 유사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유사도를 산출하는 방법을 마련함에 대한 지향점은 최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 개념에 근접한 방법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점에 있어서 통상 공학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방법론과는 구별된다고 본다.

한편, 유사도는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사한 정도라는 객관적 결과물을 기반으로 실질적 유사성 등의 판단 이외에 여러 가지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파생 활용이 이루어지는 사례로는 영업비밀 침해 여부

의 판단에 유사도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4 데이터베이스권 논의의 영향 검토

우리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있어서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 보고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그 제작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보호를 부여하고 있다(물론 전자의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작권적 보호뿐만 아니라 일련의 모든 법적 보호를 제공할 권리를 소위 데이터베이스권이라 지칭하고 있다. 저작권법 관점의 데이터베이스권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은 보호대상을 무엇으로 하는가, 그리고 권리 보호의 경계가 되는 ‘상당한 부분’을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 등이다[8].

전자와 관련하여 구체적 보호대상을 데이터베이스 체계의 구성 또는 소재 가운데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가 유사도 산출 방법 마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체계에 보호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소재 자체에 보호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에 따라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교 방법론을 마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영향을 미친다. ‘상당한’이라는 개념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할 때의 상당성과 그것이 아닌 경우의 상당성에는 차이가 있게 된다. 재판에서 특정된 유사한 정도를 상당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다. 다만, 여러 비교 방법들 가운데 세부 요소들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기반하여 최종적인 유사도를 도출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실무적으로도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기도 한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재판 실무

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유사도 산출 사례를 보면 보호대상의 무게중심을 체계의 구성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상당한 부분의 기준은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의 유사도를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사례 검토를 통한 기존 유사도 산출 방법론 분석

3.1 사례1(업무용통합프로그램 사건)[9]

계약으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프로그램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프로그램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으로 데이터베이스(DB)의 유사도를 산출한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는 데이터베이스(DB)의 유사도 산출을 위하여 (1) 필드명의 유사한 정도, (2) 테이블 키 구성의 유사한 정도, (3) 데이터베이스 프로시저의 유사한 정도를 분석하였다. 필드명 유사도 산출을 위해서는 SQL Server Management Studio에서 제출된 SQL 파일을 실행시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하고, 테이블 비교쌍 목록을 작성한 후, 작성된 테이블 비교 쌍의 필드명과 필드의 데이터형식이 동일한 필드의 개수를 계산하여 동일한 필드의 수를 전체 테이블을 구성하는 필드의 수로 나누어 이를 전체 유사도로 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데이터베이스 프로시저의 유사도는 저장프로시저를 대상으로 'sql' 확장자를 갖는 파일을 비교쌍으로 하여 비교·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세부 대상 프로그램에 따라 비교쌍 테이블은 55개 또는 56개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전제로 원본기준 및 비교본기준으로 구분하여 유사한 정도를 산출한 결과, 원본기준 시 필드명 유사도는 98.2%, 테이블 키 구성 유사도는 85.5%

및 85.7%로 산출(접수·발송프로그램 기준)되었다. 한편, 데이터베이스 프로시저(회계 관련 저장 프로시저 기준)는 원본기준 29.3%, 비교본기준 32.9%의 유사도가 산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상 프로그램이 서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때 판단은 데이터베이스의 유사도만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스코드의 비교를 비롯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유사도, 그리고 여러 관련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다.

3.2 사례2(통합전산시스템 사건)

타인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사건으로 비교 대상 프로그램 간 저작권 침해가 존재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유사도를 산출한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유사도 산출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식(접근방식, 제공되는 형식 등)의 비교·분석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정보(테이블 명, 컬럼 명, 속성, 테이블 구조 등)의 비교·분석을 병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비교 대상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모두 정리한 후, 테이블을 동일한 기능 그룹별로 분류하고, 각 동일 기능 그룹에 속한 테이블에 대해 해당 테이블의 컬럼명, 속성 등 세부항목을 비교함으로써 테이블 정보가 어느 정도의 유사도를 갖는지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비교 대상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환경(MS-SQL과 Oracle)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으므로 구축환경 면에서는 상이하며, 테이블 정보를 구성하는 컬럼, 속성정보 등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테이블에 유사한 주석문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의 주석문이므로

저작권 침해 판단의 측면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3.3 사례3(버스운수회사ERP프로그램 사건)[10]

직원의 이직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유출되고 이를 사용하여 동종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유사도를 산출한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유사도 산출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유사도를 산출하였고, 부가적으로 뷰를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양 프로그램의 테이블 명세서를 활용하여 상호 유사한 기능을 갖는 테이블을 매칭(기능만을 기준으로 하며, 속성은 판단하지 않음)함으로써 테이블 비교쌍을 도출하고, 이 비교쌍의 컬럼을 비교하여 유사 컬럼의 수를 계산하여 유사도를 산출하였다. 특히 테이블의 유사도가 70% 이상인 경우(테이블의 컬럼이 50개 이상인 경우는 60%) 이를 특별히 높은 수준의 유사도로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분석 결과 총 컬럼수는 3,775개, 이중 유사컬럼수는 2,189개로 나타나 유사도는 57.99%로 산출하였다. 한편 테이블 유사도가 70%인 경우의 비중은 전체의 37.67%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관적 요건으로써의 유사성과 객관적 요건으로써의 유사성을 구분하며,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인 객관적 요건에 대해서는 소스코드의 유사도가 0.23%에 불과한 점등을 전제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유사도가 57.99% 정도이기는 하나, 그 유사도는 각 테이블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컬럼이 존재하는지에 따른 유사도일 뿐인데,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및 기능은 대상 업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형태·종류와 그 데이터를 기초로 수행하여야 하는 작

업의 형태·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결정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및 기능에 따라 테이블 및 각 테이블에 속하는 컬럼의 개수, 속성, 기능 등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개별 컬럼은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적 요소에 불과하여 여기에 고유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두 프로그램 모두 동종의 프로그램인 점을 고려할 때 “데이터의 형태·종류와 그 데이터를 기초로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의 형태·종류가 매우 유사하므로 원·피고 데이터베이스 역시 유사할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앞서 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유사도만으로는 원·피고 각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가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하였다.

3.4 검토

앞서 살펴본 사례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안과 그 외 전자적 정보에 대한 탐지 사안 등이 명확하게 방법론 차원에서 구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이에 있어서 어떠한 표현 요소를 보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일련의 체계가 아직 학술적으로 그리고 판례상 정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량적 유사도를 도출하는 방식을 사용할 때 법리적 문제와 기술적 문제 두 가지에 직면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기존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비교분석을 소스코드 비교분석에 대한 보조적 수단으로 한정하여 활용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사례별 감정방법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appraisal methods in cases

구분	적용방법
사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드명의 유사한 정도 · 테이블 키 구성의 유사한 정도 · 데이터베이스 프로시저의 유사한 정도
사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식(접근방식, 제공되는 형식 등)의 비교·분석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정보(테이블 명, 컬럼 명, 속성, 테이블 구조 등)의 비교·분석
사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유사한 정도

4. 기존 방법론의 비판과 개선 방향 검토

4.1 현재 재판 실무상 유사도 산출 방법의 문제

살펴본 모든 사례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유사도 산출은 저작권 침해 판단을 전제로 한 정량적 유사도 마련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산출 방법을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의 유사도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유사도로 치환하여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유사도를 산출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유사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살펴본 데이터베이스의 어떠한 요소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 요소, 즉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대상 요소인가에 대한 현재 재판 실무에서의 답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테이블이 그나마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적 표현 요소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 이외에는 제시되고 있는 사항이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사례를 보면 테이블의 기능 및 역할 등에 초점을 두고 이를 매칭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이는

저작권 개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 전제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 앞서 살펴본 소위 데이터베이스권 논의에서도 벗어나 있다. 물론 기존 논의의 구조가 절대적인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우리 법이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역시 별도로 저작권법에서 보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현재의 데이터베이스 유사도 산출 방법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현재의 재판 실무상 활용되는 유사도 산출 방법이 대상을 엄격히 구분하여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사안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은 사안과 동일하게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 모두 이렇게 산출된 데이터베이스 유사도를 실질적 유사성 판단 과정에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할 근거가 된다고 본다. 사례3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유사도를 산출하기 위한 여러 요소, 즉 유사도의 주된 객체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법익을 갖기 어려운 기능적 요소에 불과하다는 점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기능적 요소들의 유사도가 높더라도 그 자체로는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유사도가 실질적 유사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갖는다. 이에 재판 실무상 데이터베이스 유사도는 소스코드 유사도를 중심으로 한 유사성 판단에 보조적인 역할로 한정되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기능적 저작물은 창작적 표현의 보호 대상 특성에 상대적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컴퓨터프로그램은 소스코드 등 그 본질적 요소가 어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받아 이에 대한 창작성 판단이 실무에서 그리 엄격

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는 그러한 표현 요소가 명확히 정리 또는 저작권법상의 의미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기능 중심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의 특징으로 인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성 판단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실제 사안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유사도가 실질적 유사성 여부의 판단, 더 나아가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 유의미한 증거로 활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점차 산업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리의 효과적 보호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4.2 문제 개선의 접근 방향

첫째, 데이터베이스의 요소 가운데 저작권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요소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살펴본 사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식, 테이블 명, 컬럼 명, 테이블 구조, 테이블 키 구성, 데이터베이스 프로시저, 필드 명 등을 비교 요소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 가운데 창작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요소를 특정하고 그 표현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앞서 유사도 산출에 활용된 요소 가운데 명칭(예를 들면, ‘테이블명’)은 저작권법에서 제호를 다루는 태도를 고려할 때 그 자체로 창작성을 인정받는 표현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역시 이론상으로는 배열 등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있을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체계가 소재인 데이터의 효과적인 검색과 활용을 위한 최적의 기능성에 바탕을 두고 구조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합체의 원칙 등에 의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표현이 되기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베이스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약을 벗어나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를 특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보호받는 표현으로 인정되는 요소가 쉽게 특정되지 않고 있어 재판 실무상 데이터베이스의 유사도를 실질적 유사성 판단 과정에서 주요한 요소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현 요소의 특징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구성 요소와 보호 원인에 대한 적절한 유사도 산출 방식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먼저,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호 법익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 각 보호법익의 특성을 고려한 유사도 산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저작물로서 다루고자 할 경우 유사도 산출은 결국 실질적 유사성 등의 판단을 목적으로 하므로 실질적 유사성의 전제, 즉 유사성 비교의 대상을 보호받는 표현으로 특정하는 등의 조건을 반영하여 유사도 산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반면, 저작권이 아닌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소유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 다양한 보호법익의 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유사도 산출을 대상으로 할 경우 각 보호법익이 갖는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사도 산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한 유사도 산출 시에는 저작권 침해와 같이 보호받는 표현만을 대상으로 유사도를 산출할 필요는 없고, 영업비밀인 정보를 탈취했는지 그 행위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므로 유사한 정도의 상당성이라는 기준 역시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한 유사도 산출 방법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정량적인 비교 또는 정성적인 비교가 가능할 요소를 특정하고 각 요소별 비교 방법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놓아야 한다.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현실과 이론적 논의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 혹은 그 외의 여러 가치를 침해당하였을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효과적인 판단 모델, 즉 합리적인 유사도 산출 모델이 부재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작금의 산업 발전 흐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모델의 부재는 증가하는 권리 침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게 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잠재적 침해자들에 침해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낮추어주게 되므로 우리 산업에 큰 문제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생각건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 침해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앞서 여러 사례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유사도를 산출하기 위해 활용한 요소들은 일단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표현요소라기 보다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요소 가운데 정량비교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데이터베이스에서 보호받는 표현요소를 특정하는 것 역시 이들 구성요소 내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들을 살펴보면 과연 저작권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보호받는 표현에 속할 수 있는 요소일지 의문이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요소 조차도 소스코드 비교의 경우에는 표현과 아이디어의 경계에 있는 요소들과 같기 때문이다. 즉, 구성요소들 가운데 창작적 표현으로서의 의미를 보이는 요소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저작권 침해 판단 분야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가 갖는 지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즉, 실제 산업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편집저작물인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한 간극을 나타내며, 이러한 간극은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적 보호에 있어서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앞서

언급한 데이터베이스의 법리적 문제와 기술적 문제 두 가지에 대해 향후 깊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적절한 가치를 어떻게 보장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Seung Jong Oh. Copyright Law : Bakyongsa, 1061. (2020). ISBN: 9791130336251
- [2] Seung Jong Oh. Copyright Law : Bakyongsa, 1061-1062. (2020). ISBN: 9791130336251
- [3] Won-Bin Kim & YongJoon Joe & DongMyung Shin. A Technique for Proof of Ownership of Metaverse Works without Providing Source Dat. JSAV, 18(2), 38-39. (2022). DOI: 10.29056/jsav.2022.12.05
- [4] Jong, Sangjo. Database protection in Korea : KOREA PRESS FOUNDATION, 24, (2006).
- [5] Kim Si-Yeol. Computer Program Copyright Similarity Theory. : Sechang Publish, 58. (2018). ISBN: 978-89-8411-754-9 93360
- [6] Nimmer, Melville B. & Nimmer, David, Nimmer on Copyright(Vol. IV) : LexisNexis, 13-37, (2010).
- [7] Kim Si-Yeol. Computer Program Copyright Similarity Theory. : Sechang Publish, 118. (2018). ISBN: 978-89-8411-754-9 93360
- [8] RYU Shiwon. Reassessing Database Right Provisions in Copyright Act - Review of Supreme Court Decision 2021Do132-.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18(1), 206-210. (2023). DOI: 10.34122/jip.2023.18.1.181
- [9]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Judgment 2009Gahap7224 Sentenced December 9,

2010
[10]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0Na10261
Sentenced October 13, 2010

————— 저 자 소 개 —————



김시열(Kim, Siyeol)

2012.8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07.6-2012.6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6-현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주관심분야> 저작권 분쟁, 실질적 유사성